목 차

제1장 총획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제계와 형식
제4조 규정명
제5조 규정의 구성 및 배열
제6조 작성형식
제3장 제정 및 기회
제7조 입안
제7조의2 사전협의 및 의견조회
제8조 제정 또는 개폐절차
제8조의2 부패영향평가
제8조의3 사전에고
제9조 등록 및 시행
제10조 통보
제11조 효력
계4장 계규정의 정비·기선 등
제12조 규정의 관리
제13조 제규정 정비의 추진
제5장 보칙
제14조 그 밖의 규범의 운용

제규정관리규정

*

제 규 정 관 리 규 정

제규정관리규정

제규정관리규정

제규정관리규정

제15조 해석 -----

1986. 5. 1제정 (규정 제131호	2008.11.10 직제시행세칙 개정 (규정	제841호)
1990.10.17개정 (규정 제223호) 2009.10.15개정 (규정	제881호)
1993. 7. 6개정 (규정 제296호) 2010. 1.20 직제규정 개정 (규정	· 제890호)
1994. 4.22개정 (규정 제340호	2011.12.2 직재시행세칙 개정 (규정	제946호)
1995. 7.31개정 (규정 제394호) 2012.7.31 직체규정 개정 (규정	세970호)
1998.10.24개정 (규정 제484호		
2002. 9.11개정 (규정 제613호) 2017.12.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규정	제1160호.)
2003.11.18개정 (규정 제647호		
2004. 2.25개정 (규정 제660호		
2005. 8.11개정 (규정 제704호		
2006. 5.26개정 (규정 제742호		
2006. 6.20개정 (규정 제766호		
2006.12.19개정 (규정 제785호) 2024.12.31. 일부개정(규정	제149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규정의 제·개정, 폐지와 그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7.12.4>

제2조(다른 발명투의 문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규정의 제·개정, 폐지와 그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다른 제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 의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15, 2017.12.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15>

- "제규정"이란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 세 최 및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0.11.20>
- 2. "규정"이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 3. "세척"이만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수행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거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정 업무차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한 다.
- 4. "지침"이만 규정 또는 세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거나 규정 또는 세척에서 정하지 않은 특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20>
- 5. "운용부서"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제규정을 주로 운용하는 부서를 발한다. <신설 2020.11.20>
- 6. "관리부서"한 「직제시행세획」에 따라 제규정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 설 2020.11.20>

제2장 체계와 형식

제4조(규정명) 제규정에는 전체적인 규정내용을 함축성있게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5.8.11>

제5조(규정의 구성 및 백업) ① 제규정의 내용은 총의, 본의, 부칙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 칙의 표시는 하지 아니하며 제규정의 내용이 간단할 때에는 총칙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월 2005.811_2021.09.16>

② 홍작에는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의 지침 등 제규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문 등을 배열한다. <신설 2005&11>

③ 본칙에는 사물의 호름이나 사고하는 순서 또는 중요도에 따라 조문을 배열한다. <개정 2005.811 2009.10.15>

④ 보칙에는 문서의 처리, 벌氧, 하위 규정 및 지침에의 위임, 기타 본칙 적용상의 특례 등을 배열한다. <신설 2005.8.11>

⑤ 부칙은 시행일, 정과조치, 관련되는 다른 규정의 개정 및 폐지, 그 밖에 부수되는 사항을 배명한다. <개정 2009/10.15>

제6조(작성형식) 제규정의 작성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칙의 장·절·조에는 일런번호와 내용을 간명히 요약한 제목을 붙이며, 절의 일련번호는 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이 시작한다.

2. 부칙의 규정이 1개이면 "조·항"으로 구분하지 아니라고 2개 이상 4개 이하이면 "항"으로, 5개 이상이면 "조"로 구분하며, "조" 또는 "항" 번호 다음의 끝호에 제목을 표기한 다

3. 하나의 조를 내용에 따라 나눌 필요가 있으면 이를 "항"으로 구분하고 항에는 ①, ②, ③ 등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4. 조 또는 항에서 사실 또는 사물의 병칭 등을 열거하려면 1, 2, 3 등의 일련번호를 불인 "호"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나눌 필요가 있으면 가, 나, 다 등의 일련번호를 붙인 "목 " ㅇㄹ 구분하다

5. 종래 제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새로운 조, 형, 호, 목(이하 이 호에서는 "항목 등"이라 한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순번을 부여한다. <개정 20201120>

가. 새로운 항목 등을 추가할 경우 추가된 항목 등의 이후의 술번은 순차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된 항목 등의 순번과 연계한 번호를 부여한다.

나. 항목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된 항목 등의 이후의 순번은 순차적으로 변경하거

제규정관리규정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9.5.27.>

운용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사원함의, 의건조회, 제8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제가, 제8조의3에 따른 부쾌형향함가 심시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한 또는 게쾌한이하 "제구 정말"이라 한다)을 다음 작 목의 순서로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경에게 검토의원을 하여야한다. 대명 2006525, 2008110, 2010120, 2011122, 2015.27, 20201120, 20216916>

가. 벌지 제1호서식의 제정 및 개페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신설 2020.11.20>

나.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2호의4서식까지의 제규정문 중 해당 제규정문 <신설

다. 변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하고, 그 이외의 경 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19, 2009.10.15, 2020.11.20>

2. 관리부서의 장은 의뢰반은 제규정안에 대하여 체제 및 형식의 적정성, 내용의 타당성 여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상호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20>

3. 운용부서의 장은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검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운용부서의 장은 제규정 최종안을 작성하며 이사장의 결제를 받아 이사회에 부의한다. <개정 2009.10.15, 2019.5.27, 2020.11.20>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마친 제규정안은 이사회 의점로써 확정된다. 다만, 제규정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개정 2004.225, 2009.10.15, 2020.11.20>

② 제8조제1항 이외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운용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사전함의, 의견조회 및 제8조와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및 제8조의3에 대문 부패영향평가 성시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구정안을 제8조제[황제] 호 목의 순서로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검토의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7, 2020.11.29. 2021.09.16.5</p>

 관리부서의 장은 의뢰받은 제규정안에 대하여 체제 및 형식의 적정성, 내용의 타당성 여부, 관계점령 및 다른 규정과의 상호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검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9.5.27.>

3. 운용부서의 장은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점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0>

4. 제3호에 따른 절차를 마친 제규정안은 윤용부서의 장이 제규정 최종안을 작성하여 이 사장의 결제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지침안의 경우에는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전절 권자의 결제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제절 2020.11.20>

제8조의2(성별영향평가) ① 제급정의 제·개정에 따라 제규정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

나 삭제된 항목 등의 순번 다음에 삭제표시와 삭제면월일을 표시한다.

6. 제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면 그 조문 끝에 "개정" 또는 "신설"과 "연원일"을 받호안에 표시한다.

7. 제국정에서 숫자가 많이 염거되거나 대조되는 사랑이 임거되는 경우 또는 서식이나 사항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면 부칙 다음에 별표와 별지서식을 1, 2, 3 등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관계조문을 표시한다. <제절 2020.11.20>

8. 제규정의 내용은 한글로 표현하되 외래어 및 한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괄호안에 원 어를 탱기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제3장 제정 및 개폐

▲7조(일안) ①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부서에서 입안한다. 다만, 운용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서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그 운용부 서를 지정할 수 있다.

</p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가 필요하면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규정의 제정이나 개폐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호 2005.811.>

제7조의2(사전협의 및 의견조회) ① 윤용부서의 장은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괴하고자 함 때에는 입안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 부서의 의견을 10일 이상 공문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1. 신속한 임직원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사정의 발생으로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안 내용이 임직원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3.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4. 보안상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입안안을 마련한 운용부서는 의건조의 후 업직원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의건조회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건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설 2021.08.16>

제8조(제정 또는 개폐절차) ① 정관 제18조제1항제9호에 명시된 규정이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승인절차상 이사회의 결의가 원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3

[규정관리규정

차별 발생 원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점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업 무 담당부서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는 제3조제2호에 한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0초서식의 성별영향평가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인권임무 담 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구수정, 명칭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평가 대상 에서 제외한다.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의죄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토기한을 연광할수 있다.

가. 불가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나,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 경우: 인권경영위 원회의 평가 결과 통보시까지

4. 운용부서의 장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무서의 장은 해당 제규정안이 성별영향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 세요형에도 판단하다. 한다다시의 강은 해당 세기장만이 정본정방량가를 받을 철도장이 인정되는 경우 인권단당부사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부 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h)>

[전문선설 2021.09.17.]

제8조의3(부패영향제가) ① 제규정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사무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20.11.2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운용부서의 장은 제규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혐의 및 의견조의를 마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조사식의 부녀행항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회하여 한다. 다만, 자구구정, 명칭변경 등 단순한 사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85.27 20211.20>

2. 감사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평가를 의뢰받으면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 영황평가 결과통보서에 따라 평가결과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나. 유관기관과의 이해관계 대립, 전문적인 사항 및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자

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검과 통보시까지

운용부서의 장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무쾌영향평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2022.10.04.>

- **제8조의4(사전에고)**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할 경우 부패영향광가 의뢰 시부터 20일간 공단 홈페이지에 사건에고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 고를 세탁한 수 있다.
- 1. 관계법령, 단체협약 또는 상위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2. 표현이나 자구만을 변정하는 정우
- 3. 보안상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신설 2020.11.20]

- **제9조(등록 및 시핵)**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관리부서 의 장에게 시행의회를 하여야 한다. 시행의회 시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간다
- 이사장 또는 전결권자의 결제문서 사본, 다만, 제규정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부 처장관의 숨인 또는 이사회 의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문서 사본
- 2.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제규정안
- 3 최종 변경되 제규정 정문
- ② 관리부서의 잠은 제1항에 따른 시행외뢰를 받으면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제규정 등보대자에 등록하고 시행하다

[전문개정 2020.11.20]

- **제10조(통보)**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제규정안 요약문을 작성하여 각 부서(교 통안천교육센터・지역본부 및 검사소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 **제11조(皇明)** 제규정은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 나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0.15, 2020.11.20>
- 1. 제규정간의 효력은 규정이 세척에 우선하고, 세척이 지침에 우선한다.
- 2 상위 제규정에 저촌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그 휴림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3. 동일순위의 제규정간에 내용의 저쪽이 있으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규정이 우선하다 다만 「정체규정」은 타규정에 우선하다 <개성 2021(0.16>

제4장 제규정의 정비·개선 등 <개점 2022.10.04>

6

제규정관리규정

[제목개정 2022.10.04.]

- 지5조(핵심) 제규정의 해석은 1차적으로 운용부서의 장이 행한다. 다만, 운용부서의 장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관리부서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육개정 202210.04]
 - 부 최 <규정 제131호, 1986.05.01.>
-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최 <규정 제223호, 1990.10.17.>
- 이 규칙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최 <규정 제296호, 1993,07.06.>
- 이 규칙은 199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최 <규정 제340호. 1994.04.22.>
- ① (시핵일) 이 규칙은 199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정파조치) 이 규칙 개정이전에 시행한 것은 개정규칙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최 <규정 제394호, 1995.07.31.>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약규정) 이 규칙 시행이전에 제정 시행된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다른 규정의 계정)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규정 중 "교통 안전진홍공단"을 "교통안진공단"으로 하고, "교통부장판"을 "건설교통부장판"으로 한다.

제12조(규정의 환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부석에서 제규정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인도록 내부전산말에 제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규정에 관한 변동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제규정 연혁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내부전산당에 개정일, 주요내용 등을 게시하는

목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내무선산망에 개정일, 수요내봉 등을 게시하 경우 제규정 연혁대장을 기록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27.>

③ 운용부서의 장은 부서 통폐합 및 업무이관 등에 따라 제규정 운용부서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신설 2024.12.31.>

제13조(제규정 정비의 추진) ① 관리부서의 장은 현행 제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규정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제규정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 하여 해당 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공단의 중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규 정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검우

3. 제규정을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정우

4. 국회, 정부, 범원 또는 국민권약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제규정의 개선 권고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정비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규정 정비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규정 정비의 대상·기준·권작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운용부서의 장은 해당 제규정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란 제규정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 고 정비계획에 따라 제규정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제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 제규정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환선설 20221004]

제5장 보칙

제14조(工 밖의 규범의 운송) ① 공단은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석부적인 업무 처리의 전화 및 방법 등을 정하거나 제구전에서 정하지 않은 특정업부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을 방점 등으로 제정·운송한 수 있다.
○ 운용부시의 장은 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편함, 업무권차서 또는 배함 일 등을 운용할 수 있다.
(재점 200011:20)>

.

제규정관리규정

부 최 <규정 제484호, 1998.10.24.>

이 규칙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규정 제613호, 20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9.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지요령)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자문위원운영요령, 기밀비 및 판공비 지급요령, 분 답급정수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명칭변경)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제정 시행중인 제규정의 명칭증 규칙은 규정으로, 요령은 세칙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규정의 명칭을 변경한다.

1. "강사료등제수당지급규칙"을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척"으로

2. "보안업무규칙"을 "보안업무운영세칙"으로 한다.

부 최 <규정 제647호, 2003.11.18.>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규정 제660호, 2004.02.25.>

이 규정은 2004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규정 제704호, 2005.08.11.>

이 규정은 2005년 8월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규정 제742호. 2006.05.26.>

이 규정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규정 제766호, 2006.06.20.>

이 규정은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규정 제785호, 2006.12.19.>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직제시행세칙) <규정 제841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세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 및 지점의 개정) ① 제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증 "연구원장"을 "연구교육원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부 최 <규정 제881호, 2009.10.15.>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최제규정) <규정 제890호, 2010.01.20.>

제1조(시핵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세2조(다른 제규정 및 지원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제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간이 개정한다. 채요조 제1항 제1호 중 "역구교육원장"을 "역구원장"으로 한다.

10

제규정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에 의해 지침의관리에관한준칙은 폐지한다.

부 최 <규정 제1346호, 2021.0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치2조(名春朝) 제8조의2의 성별영향평가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의견조회를 실시한 규정의 제·개정부터 적용한다.

부 최 <규정 제1387호, 2022.10.04.>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최 <규정 제1426호, 2023.05.10.>

이 규정은 2023년 5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복 <규정 제1496호, 2024.12.31.>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④ ~ 12 생략

부 최 (최제시행세칙) <규정 제946호, 2011.12.02.>

이 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작제규정) <규정 제970호, 2012.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규정 중 지부는 지사로 지부장은 지사장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최 <규정 제1073호, 2015.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제규정관리규정) <규정 제1160호, 2017.12.04.>

제1조(시해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2조(다른 규정의 계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 건공단법"을 "항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 최 <규정 제1227호, 2019.05.27.>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규정 제1300호, 2020.11.20.>

11

제규정관리규정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제8조 관련) <개정 2005.8.11, 2006.12.19, 2009.10.15, 2020.11.20>

□ □ 규정(지침) 제정규정(지침)안¹)²)

1. 개정(제정, 폐지)이유

해당 규정(지침)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2. 주요내용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

(현행 제○조 삭제)"등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나. ㅇㅇ제도(정책)의 도입(안 제ㅇ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다. ○○제도(정책)의 폐지(안 제○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나. 제안부서 :

1) 고딕, 글자크기 16

2) 줄간격 230

3) 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5

다. 예산조치 :

라, 관련부서 협의 :

마.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작성요령

- 1. 규정(지침)을 전부개정할 때의 제목: "□□규정(지침) 전부개정규정(지침)안"
- 2. 일부개정할 때의 제목: "□□규정(지침) 일부개정규정(지침)안"
- 3. 폐지할 때에는 "□□규정(지침) 폐지규정(지침)안"
- 4. 규정(지침) 제명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사항의 기타란 기재시 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재한다.
- 6. 용지여백은 좌·우 25mm, 상·하 16mm, 머리·꼬리말 12.7mm로 한다.

14

제규정관리규정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제8조 관련) <신설 2006.12.19>, <개정 2009.10.15., 2020.11.20>

일부개정규정(지침)안 제규정문

규정(지침) 제 호⁶⁾⁷⁾

ㅇㅇㅇ규정(지침) 일부개정규정(지침)안®

ㅇㅇㅇ규정(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50퍼센트이상"을 "60퍼센트이상"으로 하고, 동항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

부 칙

①(시행일) -----

작성요령
 용지여배은 좌·우 25mm, 상·하 16mm, 머리·꼬리발 12.7mm로 한다.

6) 신명조, 글자크기 14

7) 준간적 230

8) 고딕, 글자크기 16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제8조 관련) <개정 2006.12.19., 2020.11.20>

제정규정(지침)안 제규정문

규정(지침) 제 호3)4)

ㅇㅇㅇ규정(지침)안⑸

제1장 총칙

제2장 ㅇㅇㅇ

부 칙

* 작성요령 용지여백은 좌·우 25mm, 상·하 16mm, 머리·꼬리말 12.7mm로 한다.

3) 신명조, 글자크기 14

4) 줄간격 230

5) 고딕, 글자크기 16

15

제규정관리규정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2호의3서식](제8조 관련) <신설 2006.12.19>, <개정 2009.10.15., 2020.11.20>

전부개정규정(지침)안 제규정문

규정(지침) 제 호9)10)

ㅇㅇㅇ규정(지침) 전부개정규정(지침)안印

ㅇㅇ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ㅇㅇ규정(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ㅇㅇㅇ

부 칙

: 작성요령 용지여백은 좌·우 25mm, 상·하 16mm, 머리·꼬리말 12.7mm로 한다.

9) 신명조, 글자크기 14

10) 줄간격 230

11) 고딕, 글자크기 16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2호의4서식](제8조 관련) <신설 2006.12.19>, <개정 2009.10.15., 2020.11.20>

폐지규정(지침)안 제규정문

규정(지침) 제 호¹²⁾¹³⁾

ㅇㅇㅇ규정(지침) 폐지규정(지침)안[4]

ㅇㅇㅇ규정(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작성요령 용지여백은 좌·우 25mm, 상·하 16mm, 머리·꼬리말 12.7mm로 한다.

12) 신명조, 글자크기 14

13) 준간격 230

14) 고딕, 글자크기 16

10

제규정관리규정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제9조 관련)<매정 2020.11.20>

제규정 등록대장

규정번호	규정명	제 • 개 정 일	시 행 일	근 거	비고

210m×297m(신문용지 54g/㎡)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제8조 관련) <개정 2016.12.19.>

신ㆍ구 조문대비표15)

현 행16)	개 정 안
제○조()17)	<삭 제>
<u><신 설></u>	제○조()
제 ○조(규정명) ①규정에는 <u>간명하게</u> 표현하는 제목을 붙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 ○조(규정병) ① <u>성결과 내용은 간명하게</u> ②・③ (현행과 간음)

※ 작성요령

1. 현행과 개정안간에 상이한 부분은 그 아래에 밀줄을 긋고, 동일한 부분은 점선

만을 표시하여 대비를 알기 쉽고 명백하게 표시한다.

2. 용지여백은 좌·우 25mm, 상·하 16mm, 머리·꼬리말 12.7mm로 한다.

15) 고딕, 글자크기 16

16) 신명조, 글자크기 14

17) 중간격 180

19

제규정관리규정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제10조 관련) <개정 2005.8.11, 2006.12.19., 2009.10.15., 2020.11.20.>

□ □ 규정(지침) 개정(제정) 요약¹⁸⁾¹⁹⁾

1. 개정(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 - - - - - (세 ㅇㅇ조)²⁰⁾ 나. - - - - - - (세 ㅇㅇ조) 다. - - - - - - (세 ㅇ○조) 라. - - - - - - (세 ㅇ○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제정)일자 : 년 월 일 나. 시행일자 : 년 월 일 다. 부 칙 :

※ 작성요령 용지여백은 좌·우 25mm, 상·하 16mm, 머리·꼬리말 12.7mm로 한다.

20) 신명조, 글자크기 15

¹⁸⁾ 고딕, 글자크기 16

¹⁹⁾ 줄간격 230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제12조 관련) 대정 2020.11.20>

제규정 연혁대장

제규정 명칭		
규정운용부서	제규정번호	

연 혁 구 분 시 행 일
구 분 시 행 일

210m×297m(신문용지 54g/m)

22

제규정관리규정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제8조의 3권) /제정 2020.11.20> 부표영하장가 건과통부서

		TH	18881	2487	^l	
평가 담당	부서명					
	직급			성명		
평가대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제8조의3 관련) 여정 2020.11.20>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색상이 어두운 난은 감사부서에서 작성 접수일자		관리번호	처리기간	10일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평가 기초자료	평가대상과 관련이 평가대상 명	있는 법령(있는 경우에만 기계	¥)	
평가의리	주요내용을 작성합니	나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감사부서의 장** 귀하 1. 제규정안 1부 2.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23

제규정관리규정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9.5.27.>

제규정관리규정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제8조의2 관련) 《신설 2021.09.16》 성별영향평가 기초자료

접수일자		관리번호	처리기간	15일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평가대상 규정명			
평가 기초자료	평가대상 주요 제ㆍ	개정 내용		

성별영향 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1-1. 제·개정 제규정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国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1-2 제·개정 규정에 사용된 용어 중 설별 고정관님이 반양된 표현이 있습니까? 규정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님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2.000	1-3. 규정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 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2] 성별 특성	2. 제·개정 범령안에 설범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모르겠음
3 성별 균형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복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르곘음

년 월 일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 귀하

천부서류	1. 제규정안 1부
	2. 성별영향도 및 관련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제8조의2 관련) <신설 2021.09.16> 성별영향평가 결과동보서

평 7 담 5	부서명			
담 등	작급	성명		
평기대소	+			

성별영향 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수정안
DD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 제·개정 제규정의 적은 단상에 성별 구분 조동이 있습니까? □ 특성 성별을 당시하는 경우 성역을 고용한다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관광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교장 관생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 관광의 특성 조치가 성별 고정 관생에 막은 것이 있습니까?	[] 에 [] 아니오		[] 있음 [] 없음 (이유기술)	[] 있음 [] 없음 (이유기술)
2 성별 특성	□ 산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있음 [] 없음 (이유기술)	[] 있음 [] 없음 (이유기술)
③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 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간이 독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있음 [] 없음 (이유기술)	[] 있음 [] 없음 (이유가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제규정관리규정

27